

보도자료

2011년 2월 15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이재범 과장 (jameslee@kcc.go.kr) ☎ 750-2570
박경주 사무관 (kj1774@kcc.go.kr) ☎ 750-2571

관로·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에 관한 기술검증 결과 발표

- 공청회 개최 : 2.16.(목) 오후2시,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로설비인 관로·광케이블 등을 의무제공사업자(KT)가 경쟁사업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공간과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용량을 개정안대로 축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적정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산·학·연 선로설비 전문가를 구성하여 통신사업자의 참여하에 지난 한 달 간(1.12~2.7) 검증작업을 진행했고, 그 검증결과를 2월16일(목) 오후2시 발표한다.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 12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방통위가 개정안에서 제시된 관로·광케이블의 예비율 축소방안에 대해 기술전문가 검증을 한 후, 규제심사를 다시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구 분	개정前	개정後
관로 예비 공간	동케이블 1조의 포설이 가능한 여유공간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20%에 해당하는 공간
광케이블 예비 회선	운용회선의 35%	운용회선의 20%

현재 설비제공 고시는 경쟁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향후 KT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미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설비의 예비율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기술검증반이 검토한 기술변수는 광케이블의 경우 장애에 대비한 긴급수요, 미래수요 예측치 등이고, 관로는 마찰계수, 중량수정율, 교각, 관로 찌그러짐 등으로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검증반의 검증결과와 이번 공청회 결과를 수렴하여 고시 개정안의 관로와 광케이블의 예비율을 수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규제심사 등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관로·광케이블의 적정 예비율에 관한 공청회와 별도로 관련 설비제공제도 해외사례와 고시개정의 파급효과 등을 주제로 2.24(금)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첨 부 : 기술검증반 실시 관련 보도자료(1.12)

<첨 부>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실시

- 1.12부터 관로 및 광케이블 예비용량 검증을 위한 전담반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경쟁사업자들이 의무제공사업자인 KT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관련 고시(「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1.12.1.~12.20.)를 거쳐 현재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자체 규제심사와 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치면 방통위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이 마무리된다.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 12.23일 회의를 개최하고 고시 개정안 관련 KT와 경쟁사업자(SK브로드밴드, LGU+, CATV사업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관련 전문가로 '기술검증팀'을 구성하여 설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과 광케이블의 예비용량이 개정안대로 축소되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는 것과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것을 의결했다.

< 의무제공사업자의 관로, 광케이블 예비용량 >

구 분	개정前	개정後
관로	동케이블 1조의 포설이 가능한 여유공간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20%에 해당하는 공간
광케이블	운용회선의 35%	운용회선의 20%

고시 개정안의 주된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 KT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여유 회선의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경쟁사업자는 KT의 관로를 원활하게 빌려 자신의 광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고, KT의 관로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KT 광케이블을 빌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둘째, 그간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4년 이후 구축된 KT의 광케이블을 ‘관로에 광케이블을 포설할 여유 공간이 없고, 구축 된지 3년이 지난 광케이블인 경우에 한하여’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광케이블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도 광케이블을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토록 하고 있다.

국 가	광케이블 개방 의무	
	설비제공 제도	가입자선로공동활용 제도(LLU)
독 일	○ (관로 여유공간 없을 때)	○
프랑스	○	X
영 국	X	○
네덜란드	○	○
스페인	○ (관로 여유공간 없을 때)	○
스웨덴	○	○
포르투갈	○ (관로 여유공간 없을 때)	X
노르웨이	○	X
아일랜드	○	○
그리스	○ (관로 여유공간 없을 때)	○
이탈리아	○	○
핀란드	○	○
오스트리아	○ (관로 여유공간 없을 때)	○
룩셈부르크	○ (관로 여유공간 없을 때)	X
일 본	X	○
미 국	X	X

※ 설비제공제도: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에게 의무 개방하는 제도 (광케이블을 조건없이 개방하는 경우와 관로 여유공간이 없을 때 개방하는 경우가 있음)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Local Loop Unbundling): 교환국사에서 가입자까지의 광·동 케이블을 경쟁사업자에게 의무 개방하는 제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심도있는 기술검토를 주문한 사항은 KT가 장래 대·개체 수요발생 등을 이유로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관로 공간 및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용량’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 설비제공 고시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제공 거부 사유로 예비 용량 이외에도 ‘설비 중 구축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 ‘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 ‘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경쟁사업자의 설비 접속시 KT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15조,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전담반’을 운영한다.

기술검증 전담반에는 연구기관(ETRI), 학계,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1.12.~2.2.까지 매주 목요일 全日(10:00~18:00) 회의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 및 해외사례 검토 등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검증 전담반 논의와 함께 2월 중 별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자체 규제심사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3월 중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